

[일련번호 : 26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업무처리 부적정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♡♡동

내 용

1. 업무개요

♡♡동은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」, 「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」 등에 따라 청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조(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) 및 제3조(문화이용권의 발급), 「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」(문화체육관광부)에 따르면,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[별지 제1호 서식]의 문화이용권 신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,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문화이용권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면 문화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하며, 「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」(문화체육관광부)에 따르면, 만 19세 이상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,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[별지 제3호 서식]의 문화이용권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고, 세대원들의 지원금을 세대원 1장의 카드에 합산하는 경우, 합산 신청서에 합산되는 세대원의 서명을 모두 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☞☞동은 2022년~2024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업무처리 과정에서 ‘위임장 또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’ 등을 제출받는 것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.

[표]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업무 부적정 내역

구분	지적사항
2022~2024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리신청임에도 위임장 다수 누락 - 문화이용권 발급 대리신청(동거인)임에도, 위임장 누락 (2024.6.4. ***) - 위임장 미작성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미동의 (2023.10.19. ***, 2023.11.27. ***) - 신청인 서명 누락(2023.5.17. ***, 2023.11.21. ***) - 수임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미동의 (2023.5.3. ***) - 미성년자 신청 시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누락 (2022.8.25. ***, 2023.6.27. ***, 2024.5.10. ***) - 합산신청 시 과거(2016년) 신청서식 사용 다수 (2023.12.14. ***, 2024.3.5. *** 등) - 위임자에 수임자 서명(2022.11.21. ***) -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신청 원칙,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는 본인신청 원칙, 법정대리인(부모)이 신청가능하고 타인의 경우에만 위임장 작성하나, 만8세, 만15세 등의 위임장 작성 (2024년)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☞☞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☞☞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